

스페인, 영국, 프랑스의 언론피해구제 제도

조사팀 이 흥 길 / 예산회계팀 윤 치 경

I. 시작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의거,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정 및 중재는 소송에 비해 분쟁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용이하고,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편의적이고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청구건수는 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1981년도에는 44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도에는 1,573건으로 증가하였다. 언론중재법 시행¹⁾ 이후 도입된 원래 의미의 ‘중재’가 신청된 사례도 2006년도에 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도에는 11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처리 건수의 증가는 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조정 및 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²⁾

그러나 이처럼 법률에 근거한 조정 및 중재제도를 통해 언론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유일하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언론보도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가 대표적인 예이며, 기타 많은 나라도 언론평의회를 설립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업무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수자들은 이번 연수 기간 동안 유럽의 언론평의회와 언론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이들 기관의 언론 관련

- 1)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전 구 정기간행물법 및 방송법 등에 의한 언론중재는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언론중재법은 종래의 ‘중재’를 ‘조정’이란 용어로 바꾸고(언론중재법 제18조~23조 참조), 별도로 ‘중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언론중재법 제24조, 제25조) 고유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 2) 2009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에 의하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신청인의 93.7%, 피신청인의 95.5%가 인지하고 있다.

분쟁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언론분쟁처리 시스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II. 언론분쟁에 대한 처리 방법

가. 언론평의회(Press Council or Media Council)

유럽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는 명칭은 조금씩 달라도 유사한 업무를 하는 언론평의회가 설립되어 있다.³⁾ 언론평의회는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율규제기구이나,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에서 정부뿐 아니라 언론사로부터도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예외적으로 덴마크는 유럽의

다른 국가와 달리 법률에 의거해 미디어 분야에서 운영자금을 조성하고,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언론평의회는 일반적으로 2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경우, 이를 조사하여 사전에 언론사가 채택·동의한 Code of Practice (혹은 Code of Ethics - 이하 'Codes')를 위반했는지 감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일부 국가의 언론평의회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의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 Codes는 법률적인 요건의 상위 범주인 윤리적인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언론평의회는 이를 근거로 언론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시, 언론사의 주의를 촉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국의 언론불만처리 절차>

국 가	불만처리 절차	처리 기간
네덜란드	위원회 내부 중재자에 의한 중재 → 언론사 입장 구두 청취(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조언 청취, 여타 사실조사 없음) → 위원회의 평가(만장일치) → 권유	평균 13주
스웨덴	내부 옴부즈맨 ⁴⁾ 에 의한 평가(기각 가능) → 언론사 입장 구두 청취(제한적인 사실 조사) → 비공개회의(위원 1인의 독자적인 의견도 수용됨) → 권유	최소 26주 이상
덴마크	비공개회의(위원 1인의 독자적인 의견도 수용됨) → 권유 (※ 다른 국가의 절차에 비해 매우 간단함. 사무처 내부 판단이나 언론사 입장 청취 및 여타 사실 조사 과정 없음)	평균 11.5주
독 일	내부 검토(기각 가능) → 제한적인 사실 조사 → 위원회 평가(위원 1인의 독자적인 의견도 수용됨) → 권유	평균 17.5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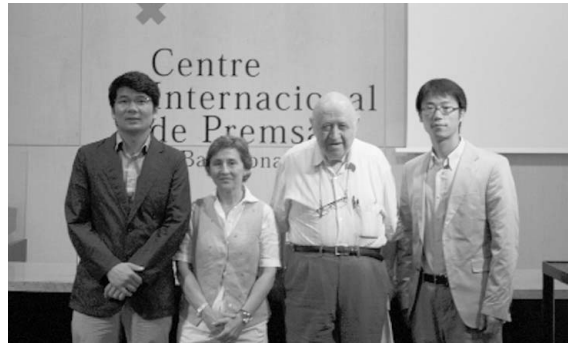
3) 독일,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등 Press Council, 불가리아 National Council for Journalism Ethics, 스웨덴 Press Ombudsman and Press Council, 프랑스 Association de la Préfiguration d'un Conseil de Presse, 스페인 Information Council of Catalunya 등.

4)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언론평의회 사무처 직원을 옴부즈맨(Ombudsman)이라고 부른다. 불만에 대한 최초 접수자이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은 사건에 대해 기각여부(Codes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한다.

각국의 언론평의회는 그 설립 조항(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상 ‘불만 접수 → 사무처 내부 판단(기각 검토) → 언론사 입장 청취(전화, 이메일) → 전원 위원회 회부 → 권유’의 절차를 통해 언론 보도 관련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청구기간은 무척 다양하다. 국내의 경우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청구 가능하나, 유럽의 경우 기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의 경우 언론보도가 있는 후 4주 이내에만 청구 가능하고, 가장 긴 독일의 경우 1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이처럼 청구요건을 비롯한 처리절차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유럽 각국의 언론평의회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



까탈루니아 언론평의회 Lúcia Oliva 회장(왼쪽 두 번째)과 Josep M. Cadena 사무총장

〈각국의 청구요건〉

국가	구분	청구 기간	대상 매체
네덜란드		보도 후 6개월	모든 매체
스웨덴		보도 후 3개월	인쇄매체(연간 4회 이상 발행), 종속형 인터넷 신문
덴마크		보도 후 4주	인쇄매체(연간 2회 이상 발행), 방송, 등록된 인터넷신문
독 일		보도 후 1년	인쇄매체(지역 무가지 제외), 종속형 인터넷 신문



나. 스페인 까탈루니아 언론평의회
(FCIC, Foundation Counsel of the Information of Catalunya)

**“지역적 독립성이 강한 문화적 특성상 언론불만처리도
각 지역별 언론평의회가 담당”**

연수단은 스페인의 까탈루니아 언론평의회(FCIC, Foundation Counsel of the Information of Catalunya)를 방문하여 유씨아 올리바(Lúcia Oliva) 회장과 호셉 마리아 까테나(Josep Maria Caden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FCIC는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스페인 북동부 까탈루니아 지역 언론사기

자들이 1998년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스페인은 1975년까지 40여 년간 프랑코 정부에 의한 독재를 경험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에 의해 보도가 통제되어 언론의 자유가 없었고, 국민들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언론통제로 인해 기자들 사이에서는 진실보도를 위한 기자정신 함양의지가 높게 형성되었고, 언론사들은 1998년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FCIC를 설립하였다.

FCIC는 다른 국가의 언론평의회와 마찬가지로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매체 등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채택한 Code of Ethics⁵⁾를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연 평균 30여 건의 불만을 처리했다. FCIC는 기자, 대학교수, 정보 계통 전문가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 1인의 위원이 보도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사건들을 매 3개월 마다 개최되는 전원 위원회에 회부한다. FCIC는 Codes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언론사에 책임을 지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은 단순히 해당 언론사에 전화로 취재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이며,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록 언론사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라도 FCIC가 결정을 강요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한은 없으며, 단지 Codes에 어긋난 보도임을 언론사가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나 정정,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책임을 지도록 권유할 뿐이다. 손해배상 및 구속력

있는 결정은 소송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지역성이 무척 강하고 지역 자치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이 교육, 법률, 문화 등에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의 언론평의회와는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다. FCIC는 까탈루니아 지역 언론사에 의해 설립되었기에, 오직 해당 지역 언론사에 대한 불만을만 처리한다. 스페인의 각 지역에는 FCIC와 동일하게 설립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 언론평의회가 있다. 만약 마드리드 중앙 TV 보도에 대해 까탈루니아 지역민이 신청한 경우, 최초 접수는 FCIC에서 하더라도 사건을 마드리드 언론평의회로 이관하여 처리하며, 마드리드 언론평의회에서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FCIC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다.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
(PCC, Press Complaints
Commission)

**“90년대 후반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건 이후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달라져”**

유럽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처리를 오랫동안 언론평의회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자율규제 시스템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고, 1991년 PCC로 모든 업무가 통합되었다.

5) 국내 ‘신문윤리강령’ 과 유사하다.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세부 조항은 인터넷 주소 <http://www.periodistes.org/fcic/contingut.php?codmenu=50> 에서 확인 가능하다.

3F(Free, Fast, Fair)를 표방하는 영국 PCC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신문과 잡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한 규범인 Code of Practice⁶⁾(이하 ‘Codes’)를 준수하도록 감시, 권유하는 것이다. PC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PCC 홍보 및 교육 담당자인 윌 고어(Will Gore)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 수 있었다.



PCC 홍보 및 교육 담당자인 Will Gore(오른쪽 두 번째)와 함께

Q. PCC의 언론불만처리 절차는 어떠한가?

A. 불만은 주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다. 만약 Codes에 위반되지 않는(적합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⁷⁾ Codes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면 언론사 편집인에게 불만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받는다. 여타 증거조사는 하지 않는다. 편집인은 보도내용이 Codes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사안에 따라 정정이나 사과보도를 게재한다. PCC는 Codes라는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편집인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므로 모든 사건을 근무일 기준 35일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모든 과정에서 PCC는 편집인의 결정을 존중할 뿐 PCC 결정을 강제하지 않고, 그러한 권한도 없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PCC 홈페이지에 사건처리 개요를 게재한다.

Q. 피해구제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른데 언론사가 심각한 실수를 한 경우, 정정이나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정이나 사과문 게재는 쉽지 않다. PCC에서는 별도로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편집인이 취재경위 등에 대해 해당 기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데, 언론사는 정정이나 사과문 게재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많다. 설사 게재한다 하더라도 분량을 최소화하거나, 원 보도

6) 국내 ‘신문윤리강령’과 유사하다.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세부 조항은 인터넷 주소<http://www.pcc.org.uk/cop/practice.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7) 부적합한 사건이라도 PCC는 사전에 기각하지 않는다. PCC는 신문사, 잡지사에 의해 조성된 사립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간혹 국민들로부터 언론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다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PCC의 투명성을 위해 접수된 모든 불만을 언론사에 전달한다.

문 게재 위치보다 훨씬 뒷면에 게재하려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대안으로 후속 보도를 하도록 하거나 온라인 기사에 대해 삭제나 수정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오직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소송을 할 경우 다시 언론에 보도되어 사생활 노출이 심각해지고, 인용되는 배상액수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Q. 청구요건은 어떠한가?

A. 사전에 Codes를 준수하겠다고 PCC에 동의한 신문사, 잡지사에 대해서 보도 후 2개월 이내 제기되는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속형 인터넷 신문·잡지에 대해서는 보도 시점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광고나 서적, 개인적 취향과 관련된 내용,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법률이나 계약적인 문제는 처리하지 않는다. 영국에는 방송이나 라디오 등과 관련한 언론불만을 처리하는 기관은 없다. 독립적인 인터넷신문의 경우 아직 불만 청구대상이 아니나, 현재 인터넷신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들이 Codes에 동의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한다.

Q. 연간 PCC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A. 2009년도 실제 처리건수는 2,000여 건이고 이 가운데 40%는 Codes에 의거해 판단 가능한 사건이었다. 불만제기가 주로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손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제기건 중 받아들여지지 않는(Codes에 위반되지 않는) 사건이 약 60%다. 불만이 인용되는 800여 건 중 약 80% 수준인 640여 건에 대해 언론사의 사과 및 피해구제보도

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다.

Q.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A. 기자들이나 잠재적으로 언론 보도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경찰, 소수 민족 등)을 상대로 PC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의 취재나 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PCC를 통해 이를 재고하도록 언론사에 요청할 수도 있다. 불만을 처리하여 피해구제문을 게재하는 것은 사후처리인 반면, 이는 사전조처라 할 수 있다. 실제 PCC가 취재나 보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청이 있음을 해당 편집인들에게 전달,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사전 검열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PCC는 언론사에게 취재나 보도 금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신중하게 대응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단순히 특정인의 의견,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다.

Q. PCC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인상적인 사례는?

A. 유명한 여성 TV진행자가 아들과 함께 길을 가는 사진이 보도되었다. 여성은 자신의 아들이 보도되어 사생활 침해로 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는데, 해당 언론사에서는 여성 진행자가 공인이고, 그 아들은 얼굴이 조그맣게 보도되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당 언론사는 향후 아들에 관해 일절 보도하지 않겠다는 약속 및 사과 보도를 하였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많았고 이에 대해 문제의식도 약했다. 그런데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이뤄졌고, 현재는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III. 언론분쟁의 처리 방법에 대한 언론계 입장

가. 유럽신문발행인협회 (ENPA, European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페이스북, 포털 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문제 이슈화, EU는 엄격한 규제방안을 모색 중 … 개인 정보와 사생활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언론에 대한 제약 될 수 있어”



ENPA Francine Cunningham 국장(왼쪽 첫 번째)과 Sophie Scrive 부국장

ENPA는 총 5,200개 이상 신문을 회원으로 하는 유럽 25개국 27개 신문인협회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신문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 지역 신문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아 언론 관련 정책을 수립, 제도화하는 EU에 신문사업자의 이익과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연수단은 ENPA의 국장 프랑신느 커닝햄(Francine Cunningham)과 부국장 소피 스크리브(Sophie Scrive)와의 면담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보도로 인한 유럽의 분쟁처리 시스템에 대해 언론계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Q. 언론의 자유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A. ENPA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EU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표현의 자유는 ‘공공 당국에 의해 간섭됨이 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는 것’으로 인격권에 대한 유럽 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0조 및 EU의 기본 권리(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1조에 의거 보호된다. ENPA는 모든 유럽의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유럽의 신문사업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통해 신문사의 경영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U법규에는 신문 광고에 대한 많은 규제가 있고, 이로 인해 신문의 주요 자원인 광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광고를 저해하는 정책이 입안될 경우, EU와 협상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연장선으로 저작권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신문 기사를 포털이 동의 없이 전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문 구독 감소, 포털의 광고 점유율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신문 기사를

포탈이 전제하는 경우, 일정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EU에 건의한 상태이고, 광고가 포탈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신문사에도 공정히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유럽의 언론피해구제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는 경우 먼저 전화 등을 통해 언론사에 정정이나 반론을 요구하고, 언론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영국의 PCC 혹은 해당 국가의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한다. 소송은 중극적인 수단이다. 여타 제도화된 피해구제 방법은 없다. 다만, EU에서는 국경을 넘는 차원의 언론분쟁(예를 들어, 영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프랑스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통상 피해자가 속한 국가의 법정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EU 규정이 있다. 그러나 ENPA에서는 구속력이 있는 제3의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페이스북, 포털 등으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이슈화되었고 EU에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정보와 사생활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언론보도에서 제약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속력 있는 제3의 기구가 설립될 경우 언론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나. 르몽드(Le Monde)

“1994년 언론사 최초로 ‘메디아포’ 시스템을 도입, 불만처리 전담 역할”

1944년 발간된 프랑스의 대표지 르몽드는 기자들이 자유롭고 소신 있는 견해를 피력하며 이념적 색채

를 띄지 않는 중도지로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르몽드의 전 편집국장 알랑 프라송(Alain Frachon)과 법무팀장 피에르 이브 로망(Pierre Yves Romain), 법률담당자 디디에 바스티앙(Didier Bastien)과 면담을 통해 프랑스의 언론분쟁처리 시스템을 알아봤다.

Q. 프랑스에서는 언론 관련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나?

A. 프랑스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 법적 제재가 크고, 과거부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왔기에 당연히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국민의식이 강하다. 또한 법률가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고, 모든 분쟁 및 소송과 관련해 제반 상담을 하는 ‘메디아포르 드 라 레퓌블리크(Mediateur de la Republique)’ 라는 기구도 있다.

파리 지방법원의 경우,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80% 이상이 파리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어 연간 수천 건의 언론 관련 소송이 행해진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서는 언론자율구제기구나 ADR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언론사와 기사는 잦은 소송에 번거로움을 느끼나 이에 대해 크게 압박을 느끼진 않는다. 언론보도에 의한 분쟁은 1881년도 제정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 루아 슈르 라 리베르테 드 프레스)에 모두 의거해 처리되는데, 이 법률은 언론의 자유 보호를 우선하기에 소송에 있어서 언론사가 거의 승소한다. 비록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다. 다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법률이 비록 언론의 자유를 우선하지만, 언론보도에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2가지 권

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디파마송(diffamation) 권한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언론사는 해당 기사와 관련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만약 자료가 충분치 않을 시 손해배상과 함께 재판결과에 대해 보도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르몽드 前 편집국장 Alain Frachon(왼쪽 두 번째)과 법무팀장 Pierre Yves Romain(가운데), 법률담당자 Didier Bastien

Q. 프랑스에서는 소송 외 어떤 피해구제방법이 있나?

A.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은 보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2가지 권한을 명시해 두고 있는데 디파마송(diffamation) 권한 및 응답(response) 권한이다. 응답 권한은 불만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연락, 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다. 법률은 언론사에 ‘퍼블리케이션 디렉터’라는 담당자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이들과 연락,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만약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럽의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언론평의회(Association de la Préfiguration d'un Conseil de Presse)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르몽드의 경우, 1994년 언론사 최초로 자체적으로 ‘미디어또(mediautor)’ 시스템을 도입했다. 1인의 미디어또는 불만이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모든 불만을 읽어보고 이를 처리한다. 만약 접수된 불만이 합리적이고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원 보도와 동일한 크기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1994년 이후 현재까지 르몽드 보도에 대해 진행된 소송은 10건이 되지 않는다. 소송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타 언론사에서도 점차 르몽드의 미디어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IV.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 각 국가에서는 언론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론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율규제기구인 언론평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다.⁸⁾ 언론평의회는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율규제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단순히 언론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윤리강령의 개념인 Codes의 위반여부만을 판단, 그 결정의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각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차이점일 수 있으나,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각 국 언론평의회에서 처리되는 연간 사건은 네덜란드 80여 건, 스웨덴 120여 건(사무처 옴부즈맨에 의해 기각되는 사건이 280여 건), 독일은 330여 건(기각되는 사건이 200여 건)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비해 그 처리 건수가 많지 않다.⁹⁾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연수자들이 방문한 모든 기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위원회 설립이후 2009년 말까지 직권결정이 내려진 전체 580여 건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이 315건으로 더 많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어떻게 언론사가 반발하지 않고 결정을 수용하는지 의아해 했다. 이에 조정과 중재제도가 가지는 장점,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심리진행을 통한 당사자의 입장 반영 등 위원회 업무절차에 대해 설명하자 그제야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여 자국의 언론불만처리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우리에게 전했다. 한국에 비해 언론문화의 역사성이 깊은 유럽에서 국내의 언론불만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에 뿌듯함을 느꼈다. 

8) 유럽 각국의 언론평의회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AIPCE (Alliance of Independent Press Councils of Europe) 홈페이지 (<http://www.aipce.net/members/>)에서 확인 가능하다.

9)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중재’와 같은 개념의 제도는 없다.